

□ 신고개요

- 신고규정: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5조
*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(300만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기간: 2026.7.1.~7.31(법정 신고기간)
- 신고방법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온라인 신고
- 메인메뉴 상단 해외공사상황통보 → 시공/준공/타절 통보 메뉴 선택하여 신고
- 대상공사: 2026.6.30.자 기준 시공 중인 해외공사
(공기 1년 미만, 설계·FS·조달 프로젝트는 신고 면제)

□ 대상공사 확인 및 신고 절차

- ①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접속
-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규 계정을 만들어 신고(신규 가입)
* 로그인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로 처리상태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.
- ② 대상공사 목록 확인 및 공사별 신고 내용 작성
- 대상공사 목록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 → 해외공사상황통보 → 시공/준공/타절 통보 → 시공경과등록
* 준공통보와 시공경과통보는 별개의 절차로, 준공통보를 완료하였더라도 시공경과를 100%로 등록하여야 시공경과통보가 완료됩니다.
- ③ 작성내용 최종 확인후 [저장] → [제출]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문서 제출
- 신고문서 상태가 「작성중」 또는 「보완요청」인 경우 미신고 상태 반드시 [제출] 버튼을 통해 신고문서 제출 필요
※ 상세 신고 절차: 시공경과통보 매뉴얼 참조(해외건설e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다운로드)

□ 주의사항(중요)

- 미화 5억불 이상 공사는 '응급의료시설' 항목 필수 입력
- 미화 5억불 이상 공사는 현장에서 50킬로미터 이내 병원이 없는 경우, 현장 내 응급의료시설(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)과 의료진 1명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근거규정: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3 및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
- 미수금이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공시된 경우 공시된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
-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'미수금 대손처리' 항목 입력
- 미수금, 유보금, 클레임 금액 등 수령할 잔금이 있는 경우, 타절 및 준공통보 되었더라도 시공경과통보 대상에 포함됨. 끝.